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

-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 자료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정
- 2)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개정

나.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안 제7조제2항)

지역 내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법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생략)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u>제9호까지</u> 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1. ----- ----- ----- <u>제10호까지</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u>

2. ~ 6. (생략) ③ (생략)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③ (생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의3제1항----- ----- ----- -----.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60